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0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제220230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유효기간 연장 (안 법률 제12644호 부칙 제2조)	3

I.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제220230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26.

다. 회 부 일 : 2024. 7.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 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요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

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유효기간 연장

(안 법률 제12644호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u>2024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8년 12월 31일까지</u>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32조제4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법」 제32조1)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음(제32조제4항).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축산 분뇨 등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지역 인근의 축사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2014년 5월 21일에 유효기간 3년으로 도입(법률 제12644호)되었음.

그러나, 정부와 토지소유자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보상합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 제12644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됨.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새만금사업법」 법률 제12644호 부칙 제2조 개정 연혁 】

개정일	개정 내용
2014. 5. 21.	(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3년간 효력</u> 을 가진다.
2016. 12. 2.	(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u> 을 가진다.
2020. 1. 29.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u> 을 가진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①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② 김제 용지 정착농원으로 두 곳임.

【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 】

구분	위치	지정면적(m ²)	지정기간
익산 왕궁 정착농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790,384m ² (2,205필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제 용지 정착농원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6m ² (1,744필지)	

※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1-31호(2021. 2. 15., 제정) 및 제2021-218호(2021. 11. 3., 제정) 재구성

그런데,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축사 매입이 완료되어 생태복원이 추진 중이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공시지가 상승, 철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축사 매입 대상 53개 농가 중 22개 농가의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임.

【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현황 】

구 분	합계	매입완료	매입절차 진행중			사업대기
			계	계약협의	감정평가	
농가수	53	20	22	6	16	<u>11</u>
매입면적(㎡)	215,567	97,252	71,957	19,944	52,013	46,358
사육두수	60,806	26,295	21,151	5,859	15,292	13,360
매입비(억원)	343	238	105(11농가 매입가능, 11농가 매입비 부족)			-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을 완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김제시 용지면의 용암천은 새만금호 인접 하천으로 축산오염원이 50%를 차지²⁾함.

또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³⁾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2단계 대책기간(’11~’20)에서 추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관리 강화 등 3단계 대책에서 보다 강화된 상류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질이 개선⁴⁾되고 있음.

2) 환경부,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안)」, 2021. 12., p.58

3)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보도자료,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공항건설 모두 계획대로 진행중」, 2022. 12.

4) ’11년 대비 ’21년 기준 만경강은 77.9%, 동진강은 50.3% 개선

즉, 익산 왕궁 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정부의 축사 매입은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새만금사업은 1996년에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 갯벌 살리기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1999년 5월부터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10년 주기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⁵⁾’를 목표로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새만금사업 추진에 수질관리가 중요한 요인인 점,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입이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개발법」 제32조제4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잔여 축사를 매입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국토교통부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축사 매입을 통한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미매입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하여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축사 매입 지원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5) 「새만금 기본계획(2021)」 상 수질관리대책의 목표

다만, 국토교통부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생태복원 사업의 총사업비 481억원⁶⁾ 전액이 31개 농가의 토지등 매입 및 생태복원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잔여 22개 농가의 토지등 매입 및 생태복원에 소요될 예산 370억원⁷⁾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481억원 외 추가 국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제출⁸⁾받았고, 이에 추가적인 국비 예산 확보 없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매수기한을 단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지만, 2024년도 축사매입 예산의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사업계획의 안정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

6) 총사업비 481억원(국비): 토지매입 343억원, 생태복원 138억원

7) 참고 1, 2 참조

8) 전라북도 1회(2021. 12.), 김제시 3회(2021. 7., 2021. 9., 2021. 11.)

참고 1

특별관리지역 현황 및 매입 등 추진실적(왕궁·용지)

※ 자료: 국토교통부

□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 생태복원

- (사업위치) 익산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익산·금오·신촌)
- (사업기간) 2011년 ~ 2025년(1단계 '11~'20, 2단계 '21~'23)
- (총사업비) 1,754.5억원(국비 1,627, 지방비 127.5) * 지방비 추가편성 127.5억원
- (사업량) 204농가, 597천m²
- (사업시행)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
- (추진상황) 현업축사 매입완료('11~'23), 생태복원 추진('24.8~'25.12.)

□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 생태복원

- (사업위치) 김제 용지 정착농원 3개 마을(신암·비룡·신흥)
- (사업기간) 2022년~2025년(4년)
- (총사업비) 국비 481억원
 - (토지매입) 343억원('22~'24), (생태복원) 138억원('23~'25)
- (사업량) 53농가(돼지 47, 한우 6), 169천m²(잔여지 46천m² 포함 215천m²)
- (사업시행)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현업축사 매입(매입완료 20, 매입절차 22, 사업대기 11) : '22~'24.7.

구 분	합계	매입완료	매입절차 진행중			사업대기
			계	계약협의	감정평가	
농가수	53	20	22	6	16	11
매입면적(m ²)	215,567	97,252	71,957	19,944	52,013	46,358
사육두수	60,806	26,295	21,151	5,859	15,292	13,360
매입비(억원)	343	238	105(11농가 매입가능, 11농가 매입비 부족)			-

- (예산현황) 총 면적 215,567m²(53농가) 중 128,058m²(31농가) 매입 및 116,342m² 생태복원시 기 반영 사업비(481억원) 모두 소진 예상

☞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매입비 부족액 22농가 (87,509m²), 생태복원비(99,225m²)에 소요될 예산 추가 확보(370억원) 필요

참고 2

미매입 토지 등 추정 사업비

※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잔여농가 22개소		
			사업량	평균단가	소요비용 (억원)
합 계					370
매입비	소 계				250
	축사 매입	계			215
		토지매입	87,509m ²	69,140원/m ²	60
		건물매입	38,472m ²	398,520원/m ²	153
		주거이전비	22개소	8,888천 원/개소	2
	영업 보상	계			29
		돼 지	24,513	118,750원/두	29
		한 우	-		-
	수수료 등		3년	2억원	6
생태복원	소 계				120
	축사철거		40,500m ²	247,770원/m ²	100
	수림대 조성		99,225m ²	14,500원/m ²	14
	수수료 등		3년	2억원	6

< 비 고 >

- (토지 매입량) 전체 53개 축사부지 215,567m² 중 매입가능 부지 128,058m²
(완료 96,009m², 진행 32,049m²) 면적을 제외한 잔여 물량(87,509m²)
- (건물 매입량) 전체 53개 축사건물 면적 93,000m² 중 매입가능 건물
54,528m²(완료 40,950m², 진행 13,578m²) 면적을 제외한 잔여 물량(38,472m²)
- (매입 단가) 토지·건물매입 및 영업보상의 경우 '22~'23년 실제 감정
평가 단가에 물가상승률 연 3% 적용한 '25~'27년 평균 단가
- (생태복원) 잔여물량 및 설계단가에 '26~'28년 물가상승률 연 3% 적용
- (수수료 등) '22~'23년 사업 소요 평균 단가